

초기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2. 11. 6.)

(전면개정 2022. 5. 1.)

(제명변경 2022. 5.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2 및 창업지원단 규정 제4조에 따라 창업자의 창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기술창업자 육성과 창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총괄하며,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육성 발굴하고, 이를 성공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초기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자의 기술개발 업무지원
2. 창업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평가
3. 창업자의 세무·회계, 마케팅 및 자금연계 지원
4. 핵심/공동 애로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5. 애로기술상담 및 지도
6. 사업화 자금 지원·관리,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관리
7. 창업준비공간 지원, 자료 및 공동기자재 관리 운용 지원
8. 창업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9. 창업교육 운영 및 관리
10.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11. 창업아카데미 운영
12. 창업친화적 학·인사제도 운영 및 관리
1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조직)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산하에 필요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행정인력) 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과 전문 보육매니저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보육매니저는 보육매니저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소벤처의 창업과 경영 스킬보유자 또는 유경험자 중에서 총장이 임용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기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로 같음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본교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하며, 정부사업 수행 시에는 사업기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이 규정은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